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 . . (제 회)	

방위산업기술보호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 (국방부장관)
제출연월일	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방위사업청장이 방위산업기술 보호 종합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이를 공표하게 하고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을 위반한 경우에 방위사업청장이 부과하는 과태료 부과절차를 개선하는 등의 내용으로 방위산업기술 보호법(법률 제20024호)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법률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방위산업기술 보호 종합계획 수립시 공표방법 등 절차 마련
- 나. 방위사업청장의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 등 기타 법률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 략
-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방위사업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방위사업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대상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장이 징수하는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영은 2024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생략) <u><신 설></u>	제3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방위사업청장은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법 제4조제4 항에 따라 방위사업청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 및 대상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방위 사업청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별표와 같이 과태료를 부 과 · 징수한다.	제2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 24조제2항에 따라 방위사업청 장이 징수하는 과태료의 부과기 준은 별표와 같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연 락 처	(02) 748 - 5613